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2선거구 김종무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서
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
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받게 되는

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을 정하여

소규모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

임대주택 확보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

통합심의를 거쳐 법정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

법정상한용적률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
용적률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에
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 등에 공급하도록 하였으며,
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 등이
통합심의를 거쳐 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
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에서 법정상한용적률을 뺀
용적률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에
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